

# 충청북도장한여성대상조례증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1.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2. 제출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1993년 1월 29일

○ 회부일자 : 1993년 1월 29일

3. 개 정 이 유

충청북도 장한여성 大賞의 수상부문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수상자를 결정함에 있어 심사위원회의 권한을 강화 현실과 부합치 않는 수상자 결정방법을 현실에 맞도록 개정코자 함.

4. 주 요 골 자

가. 조례상 수상부문인 장한 어머니, 장한 며느리, 장한 여인 등 3개 부문중 장한 여인 부문의 규칙에 명시된 3개분야중 장한 아내 분야를 조례 수상부문에 장한 아내 부문으로 추가.

나. 수상자 결정 방법에 있어 각 부문별로 심사위원회의 복수추천을 받아 도지사가 각 부문별로 1명씩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심사위원회의 예심을 거쳐 전체심사위원회의 심사 후 도지사가 결정하도록 개정.

## 5. 검토 의견

충청북도 장한여성 大賞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검토한바,

가. 장한여성大賞 3개 수상부문(장한 어머니, 장한 며느리, 장한 여인)중 장한 여인 부문에 관한 규칙 내용중 장한 아내 분야를 조례에 신설하여 4개부문으로 하고, 장한 여인 부문 3개분야(충북을 빛낸 여성, 지역사회공헌이 뚜렷한 여성, 장한 아내)중 장한 아내 분야를 삭제하여 2개분야로 조정하려는 것은 가정과 지역사회 봉사자를 명확히 구분하려는 것이고,

다. 부지사가 심사위원장으로 되어 있는 심사위원회에서 수상자를 결정하는데 있어, 신중을 기하기 위하여 부문별로 심사위원회의 예심을 거쳐 전체 심사위원회의 심사 후 도지사가 결정토록하는 등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 6. 개정조례안 및 참고자료 : 별첨